

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의무 투자에 관한 사항 안내

본 안내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09 조제 1 호가목 및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 7-1 조의 2 에 따라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(주)가 운영하는 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코리아 원자재 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 4 호[주식혼합-파생형]에 대한 당사 고유자금 의무 투자에 관련한 안내입니다.

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(주)는 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코리아 원자재 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 4 호[주식혼합-파생형] 펀드의 설정일인 2021 년 08 월 04 일부터 당사의 고유자금 2 억원을 의무 투자하여 책임투자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금융위원회의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 7-1 조의 2 에 따라 자사의 의무투자기간(3 년) 종료일 이후에는 당사의 고유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2024 년 08 월 03 일 이후에는 동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본 안내는 당사의 투자금 회수 결정을 안내 드리는 것은 아니며 고유재산 의무투자 기간 종료 이후 운용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님의게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. 당사의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에도 펀드는 정상 운용됩니다.

- 아 래 -

구분	세부내용
투자 주체	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(주)
투자 대상	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코리아 원자재 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 4 호[주식혼합-파생형]
의무투자기간	2021 년 08 월 04 일 ~ 2024 년 08 월 03 일
투자금액	2 억원 (최소 의무 투자금액)
회수방법	- 원칙: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분할(2 회 이상) 회수 - 회수금액: 투자원금의 50% 이하(회차별) - 회수기간: 회차별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※ 다만, 투자회수금이 해당 집합투자기구 수탁고의 5%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

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(주)